정 관

(2022. 12. 26. 20차개정)



학교법인구세군학원

제1장 총칙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2절 회계 제3절 예산 · 결산자문위원회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절 이사회 제4장 수익사업 제5장 해산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면 제2관 신분보장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3절 재심위원회 제4절 사무직원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2절 대학원대학 제3절 고등학교 제4절 정원 제8장 대학평의원회 제9장 학교운영위원회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2절 운영위원회 기능 제3절 운영경비 등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별표1 법인사무처 일반직 정원 별표2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일반직 정원 별표3 대학원대학 일반직 정원

제11장 사학기관 행동강령

제12장 보칙

정 관

1986.01.31. 제정 **2022. 12. 26 20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한국구세군의 학교들과 교육기관들을 위한 이 법인의 목적은 구세군 신앙의 목회자 임명을 위한 교육과 훈련과정이며, 한국구세군의 가치와 전통들과 대한민국의 중고등교육법과 교육이념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과 학업의 과정들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법인은 한국구세군의 일부이며 대한민국의 법률과 세계구세군과 한국구세군의 교리와 군령군율, 정책을 준수한다.

제2조(명칭)이 법인은 학교법인 구세군학원(이하 "법인"이라고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 경영하다.

- 1.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
- 2.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제4조(주소)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에 둔다. 이 법인의 분사무소를 경기도 과천시 관악산길 216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 ①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구세군국제본영의 승인 후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관할청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 ③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이 법인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구세군국제본영의 승인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 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 ①본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되 그 회계처리는 사학윤리강령 등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 ②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하되 그 예·결산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이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의무부담은 학교의 장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본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본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 · 결산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 3(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

- ① 법인의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를 특정하지 않는다.
- ② 법인은 기부금의 내용을 법인 홈페이지게 공개한다.

제3절 예산 · 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설치) 내지 제21조 (운영세칙)<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이사: 7인(개방이사 포함)

②감사 : 2인

제2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 5년 2. 감사 : 3년

-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감사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구세군국제본영의 승인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이사정수의 과반수 이상은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의 추천을 받은 구세군 사관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24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 ①이 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학교와 법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구세군 사관 인 자
- ②사립학교법 제22조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24조의3(개방이사의 정수)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인으로 한다.

제24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③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각급학교의 학교운 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하다.
- ④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또는 대학평의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의5(추천위원회)

- ①추천위원회는 대학원대학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 ②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구세군대한본영에 의해서 추천위원회 위원 3명이 추천된다.
- 2.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추천위원 1인씩을 각각 추천한다.
- 3.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4.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선임의 제한)

-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③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감사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의2 및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제26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한다.
-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삭제>

제27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이사장을 보좌하고 학교법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8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 ①이사장의 사고로 인한 부재 시에는 구세군국제본영의 사전 승인 후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시행한다.
- ③<삭제>

제29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한다.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을 한다.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을 한다.
- 5.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을 한다.

제30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의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하고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과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31조(이사회의 기능)

-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학교법인의 예산, 추경,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2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 ①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이사장을 포함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삭제>
- ④<삭제>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4조(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학교법인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회의 소집 특례)<삭제>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수익사업의 종류)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개발 및 운영, 임대사업 실시와 기준에 적합한 동산을 보유한다.

제37조(수익사업의 명칭)제36조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구세군학원 수익사업부를 경영한다.

제38조(수익사업체의 주소)구세군학원 수익사업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길 69에 둔다.

제39조(관리인)

- ①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 ③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 위탁업체의 요건과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40조(해산)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이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인의 해산은 구세군 국제본영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해야만 한 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구세군단체에 기부하여 귀속한다.

제42조(청산인)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구세군국제본영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임원(이사 및 감사)이 청산인이 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면

제43조(임면)

①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각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대학원대학의 총장: 4년
- 2. 고등학교의 장 : 4년

②대학원대학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총장이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임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합청에게 보고한다.

1. 교수 : 정년보장제

2. 부교수 : 5년

3. 조교수 : 3년

4.<삭제>

5.<삭제>

③각 학교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또한 학교의 장의 정년도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준용한다.

④고등학교 교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면(신규채용, 승진임용, 승급, 전직, 전보, 파견, 강등, 휴직, 복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실증의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 임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구세군 사관의 경우 구세군군령군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⑥<삭제>

⑦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임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한다.

⑧<삭제>

⑨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고등학교의 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 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고, 임용된 교사는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임시교원, 기간제교사, 겸임교원)

①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임시교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 ③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 임면은 당해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대학원대학에는 교원 이외에 겸임교원 · 명예교수 · 초빙교원 ·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⑤고등학교에는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제43조의2에 제1항, 제2항, 제3항의 교원이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및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⑥제4항 및 제5항의 겸임교원 등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

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은 교원인사위원회,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제4항 및 제5항의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기준·보수 및 임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3(특별승진)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정관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휴직의 사유)사립학교법 제59조(이하 "법" 이라고 한다)를 준용한다.

제45조(휴직의 기간)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2.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로 한다.
- 3. 법 제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 4. 법 제5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 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5. 법 제5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 6. 법 제59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 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7. 법 제5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8. 법 제59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9. 법 제59조제1항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 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10. 법 제59조제1항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46조(휴직교원의 신분)

- ①휴직 중인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법 제59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휴직교원의 처우)

- ①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 정을 준용하여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을 지급한다.
- ②법 제5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직위의 해제)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

여하지 않을 수 있다.

-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 는 임면 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와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④임면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 ⑥제1항제1호와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와 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7)<삭제>

제48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 ①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와 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 2. 교원장계위원회에 중장계 의결을 요구중인 때
 - 3. 감사원이나 경찰, 검찰 및 그 밖의 수수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 사중인 때
 -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중인 때
- ②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나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의3(면직의 사유)

- ①임용권자는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9조(보수)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고등학교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의2(명예퇴직수당)

- ①명예퇴직수당 지급제도 실시여부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법인에서 자율 결정한다.
- ②고등학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의3(후임자 보충 발령의 유예)<삭제>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각 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 2. 각 학교의 보직 ·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 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인사위원회 조직)

- ①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훈련처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3인의 조교수 이상으로 조직한다.(단, 고등학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 ②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단,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임명한다.)
-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인사위원회 회의소집 등)

-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회의록 작성)

-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 ②간사와 서기는 학교소속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운영세칙)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 ①교원의 징계사건 등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교원징계 위원회를 둔다.
- ②교원장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및 외부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외부위원은 1인 이상 포함하며,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교원징계위원회 조직 및 관할)<삭제>

제61조(교원장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한다.
- ②교원장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징계의결의 기한)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제척사유)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

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2(위원의 기피)

-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 위원이 재적 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3(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 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징계의결)

-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 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②임명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 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7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삭제>

제68조(운영세칙)<삭제>

제3절 재심위원회

제69조 내지 제82조<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 (행정직원 · 특정직원 · 기술직원 · 기능직원 ·

고용워 등 이하 "일반직원" 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본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②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임용)

-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 (이하 "임용" 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구세군 사관의 경우 구세군군령군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 ③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고등학교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를 준용한다.

제84조의2(근속승진)

- ①사립학교 일반직원으로서 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장기 근속한 자를 인사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 ②근속승진제 실시 시행에 필요한 절차, 자격요건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5조(복무)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보수)

①~②<삭제>

③일반 및 대우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에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7조(신분보장)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징계 및 재심청구)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구세군군령군율을 준용한다.

제88조의2(고등학교 일반 직원 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9조(법인사무조직)

-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처를 두되, 그 분장 업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②법인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등을 둘 수 있다.

제2절 대학원대학

제90조(총장 등)

- ①대학원대학에는 구세군국제본영의 승인 후 이사회에 의해서 임명되는 총장을 둔다.
-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원대학을 대표한다.
- ③대학원대학에 구세군국제본영의 승인 후 이사회에 의해서 임명되는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 ④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한다. 부득불한 이유로 총장의 부재시에 총장을 대신하여 부총장은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하부조직)

- ①대학원대학에 교무처와 사무처, 훈련처를 둔다.
- ②각 처장은 교직원중에서 겸보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2조(부속시설)

- ①대학원대학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 ②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교직원중에서 교원으로 겸보한다.
- ③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④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별 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3조(도서관)

- ①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조교수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고등학교

제94조(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과 행정담당관을 둔다.

- ②교장은 초 · 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규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 ③교감은 초 · 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에 규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 ④행정담당관은 학교의 법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파송된 사관이며, 그 업무 및 행정 규칙은 이사회에서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⑤고등학교에 교목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세군사관 자격을 소지한자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겸보한다.

제95조(하부조직)

①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삭제>

제4절 정원

제96조(정원)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내지 별표3과 같다.

제8장 대학평의원회

제97조(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및 명칭)대학원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명명한다.

제98조(평의원회의 구성)

①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원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원 2인
- 2. 직원 3인
- 3. 학생 2인
- 4. 동문 2인
- 5.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②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99조(평의원 위촉)평의원회 평의원은 각 구성단위의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100조(평의원회 의장 등)

- ①본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01조(평의원회 임기)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2조(기능)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 ①대학원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②대학원대학의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③대학원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④대학원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⑤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⑥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⑦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3조(개방이사의 추천)평의원회는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추천요청을 받았을 경우 법인 정관 제24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추천위원회에 2배수 추천한다.

제104조(감사의 추천)평의원회는 법인으로부터 감사 추천요청을 받았을 경우 법인정관 제24조의4 및 제25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추천위원회에 단수 추천한다.

제105조(회의 및 회의록 작성)

- ①제102조 규정에 의해 필요가 발생할 시 총장 내지 의장 혹은 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②본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평의원 정수의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본 평의원회의 의결은 정관 및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④본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장을 포함한 출석평의원 과반수이상의 서명날 인을 한다. 또한 총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보관한다.

제106조(개정)이 규정의 개정은 본 회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학교운영위원회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107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8조(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단, 학생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1. ~ 3.<삭제>

②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1. 학부모위원: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제109조(위원의 선출 등)

- ①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단, 교원위원 선출시 1인 1표제로 하며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할 성별, 연령별, 경력별 교원수는 전체 교직원 합의하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③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⑤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하다.
- ⑥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 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다.

제109조의2(회의 및 회의소집)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9조의3(안건의 제출 및 발의)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의 장 또는 재적인원 4분의1 이상의 연서로 제출 받거나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안을 학교의 장이, 학교 발전기금운용 계획은 위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09조의4(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 113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9조의5(회의록 작성 등)

-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의 장 및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교육 또는 교권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말에 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9조의6(회의 공개 등)

①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 또는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과 동 시에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의 참관 안내도 겸하여야 한다.

제109조의7(소위원회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인 자문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다.

②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 칙으로 정한다.

제110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11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

②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에 재임 중인 자로 한다.

③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⑤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26조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2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3조(위원의 자격상실)

①~②<삭제>

③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경우
- 2.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 3. 제111조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4. 회의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
- 6. 제112조제3항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7. 사직서를 위원장에 제출한 경우

제2절 운영위원회 기능

제114조(기능 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5.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6.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7.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2.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
- 14.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16.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 17.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의 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 ②학교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3호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교 홈페이지
 - 2. 학부모 총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③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 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④제1항제8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 할 경우, 학생 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생 설문조사
 -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⑥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다.

제115조(시행의무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14조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있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운영경비 등

제116조(운영경비 등)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7조(임원 및 간사)

①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학교 행정실장 또는 전체 교직원 중학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간사로 한다.

제118조(이사장의 개선요구)이사장은 운영위원회 운영이 건학이념 또는 교육목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고 운 영위원회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9조(위임규정)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120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이 법인이 설치 · 경영하는 인평자동차고등학교에 학교교 권보호위원회를 설치 · 운영한다.

제121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①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직원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하다)하다.

-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인천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 쟁
-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2조(위원회의 구성 등)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③학교장은 필요시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123조(위원장)

-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4조(위원의 의무)

-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 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5조(분쟁조정 신청)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6조(회의개최 등)

- ①회의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개최한다.
- ②분쟁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③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위원의 제척)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28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 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 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 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9조(간사)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30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준용)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기타 회의 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 정관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131조(운영세칙)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사학기관 행동강령

제132조(사학기관 행동강령)

①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신설 2022.10.18.>

- ②위 1항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u>가. 법인 또는 학교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u>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u>나. 법인의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u> <u>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u>
- ③ 법인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사적 이해관계를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대상의 범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⑤ 그 밖에 사학기관 종사자가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⑥ 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시 임용권자는 징계등의 제재 조치를 한다<신설2022.12.26.>

제12장 보 칙

제133조(공고)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구세공보에 공고한다.

제134조(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35조 <삭제>.

부 さ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198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0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01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0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보 친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문대학과-2865)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 10등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기능직 9등급 직원으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이 정관이 시행하기 전에 기능직 10등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기능직 9등 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024 학교법인이사회의결)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212 학교법인이사회의결)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에 대한 경과조치)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경력은 조교수 경력으로 본다.

부 칙(20130808 학교법인이사회의결)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3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20140218 학교법인이사회의결)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4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기술직 임용에 대한 특례)이 정관이 시행하기 전에 기능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기술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0923 학교법인이사회의결)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세군사관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 ①구세군사관학교는 2016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해당기간에는 구세군사관 대학원대학교에서 구세군사관학교 교육과정을 개설하며, 구세군사관학교 재적생은 종전의 학칙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구세군사관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 ②구세군사관학교의 학적부와 교직원 인사관련 전산자료 및 서면자료 일체를 한국사학진흥 재단으로 이전하여 구세군사관학교 관련 제 증명의 발급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영구 관장한다.
- ③구세군사관학교의 존속기간 종료시까지 학적부(재학·휴학·졸업·성적 등)를 구세군사관대학 원대학교에서 차질 없이 수행한다.

제3조(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구세군사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2015년 3월 1일 부로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폐지되는 구세군사관학교의 재산 등에 관한 귀속조치)

- ①이 정관 시행으로 폐지되는 구세군사관학교에 소속되는 시설·설비 및 물품 등의 재산과 회계의 적립금·이월금 등의 자금은 이 정관 시행일에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에 귀속된다.
- ②이 정관 시행으로 폐지되는 구세군사관학교와 체결된 계약 등 채권·채무관계는 이 정관 시행일에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로 승계된다.

부 칙(20150623 학교법인이사회의결)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세군사관학교에 대한 경과조치)구세군사관학교의 학적부와 교직원 인사관련 전산자료 및 서면자료 일체와 구세군사관학교 관련 제 증명의 발급업무를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에서 영구 관장한다.

부 칙(20161115 학교법인이사회의결)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6년 12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등학교의 장이나 교감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따른다.

부 칙(20170214 학교법인이사회의결)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7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고등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따른다.

부 칙(20171128 학교법인이사회의결)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8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학교법인이사회의결)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18년 12월 18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20200818 학교법인이사회의결)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20년 8월 18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20221018 학교법인이사회의결)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22년 10월 18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20221226 학교법인이사회의결)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22년 12월 26일부로 시행한다.

별표1 법인사무처 일반직 정원

직 급	일반직(명)
3급	1
4급	0
5급	1
6급	0
7급	0
8급	0
총 계	2

별표2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일반직 정원

직급	일반직(명)	기술직(명)
5급	1	0
6급	1	0
7급	0	1
8급	1	1
9급	0	3
총 계	3	5

별표3 대학원대학 일반직 정원

직급	일반직(명)	기술직(명)
5급	1	0
6급	1	0
7급	1	0
8급	0	1
9급	0	2
총 계	3	3